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1. 개정이유

수입 가공식품과 국내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글자크기)을 통일하여 업체 부담완화 및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모호한 통신판매(전자매체) 원산지 표시 방법을 명확화하는 한편,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업무 이관('22.1월)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에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국내 가공식품의 글자 크기(10포인트)와 동일하게 표시하도록 개정(안 별표 1제2호가목)

- 1) 현재 수입 가공식품의 경우 포장지 면적에 따라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다르게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입 가공식품도 국내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와 동일한 10포인트 표기하도록 하여 해당 업체 등의 부담완화 및 형평성 문제 해소(한국식품산업협회 규제 건의, 농식품규제개선 과제 선정/ '22.9)

* (현행) 포장 표면적이 3,000cm² 이상인 경우 20포인트 이상, 50cm² 이상 3,000cm² 미만인 경우 12포인트 이상, 50cm² 미만인 경우 8포인트 이상 → (개정안) 포장지 면적과 상관없이 모두 10포인트로 원산지 표시

나.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글자 크기, 위치) 명확화(안 별표 3제2호가목)

- 1) 현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를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로 개정하여 표시 위치를 명확화

2) 현재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크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격의 경우 제품의 할인 등으로 가격표시 크기가 자주 변경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최초 등록된 가격표시 기준”으로 개정하여 원산지 표시로 인한 업체의 부담감 완화

* (현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한다” → (개정안)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최초 등록된 가격표시를 기준으로 한다)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에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추가(안 제5조 및 별지 제2호 서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3)가)부터 라)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수입 농수산물 및 반입 농수산물

(1) 포장 표면적이 3,000cm² 이상인 경우: 20포인트 이상

(2) 포장 표면적이 50cm² 이상 3,000cm² 만인 경우: 12포인트 이상

(3) 포장 표면적이 50cm² 미만인 경우: 8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4) (1), (2) 및 (3)의 포장 표면적은 포장재의 외형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통조림·병조림 및 병제품에 라벨이 인쇄된 경우에는 그 라벨의 면적으로 한다.

나)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수입 농수산물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가공품

(1)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으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한 크기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한다.

(2) (1)에 따른 글씨는 각각 장평 90% 이상, 자간 - 5%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cm²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장평 50% 이상, 자간 - 5%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별표 3 제2호가목1)가) 중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를 “옆·위·아래에 붙여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로,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한 위치를 표시하고 매체”를 “매체”로, “표시할 수 있다”를 “표시할 경우에는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 표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1) 다) 본문 중 “가격표시”를 “가격표시(최초 등록된 가격표시를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제10조의3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 제2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 및 반입 농수산물가공품은 제조일을 기준으로 2024년 9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별표 3 제2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증표) <u>법 제7조제4항에</u> 따 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 하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증표) <u>법 제7조제4항 및 제</u> <u>10조의3제3항에</u> ----- ----- -----.
[별표 1]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 시방법	[별표 1]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 시방법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표시방법	2. -----
가.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가.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글자 크기	3) -----
가) 포장 표면적이 <u>3,000cm²</u> <u>이상인 경우: 20포인트 이</u> <u>상</u>	<u><삭 제></u>
나) 포장 표면적이 <u>50cm² 이</u> <u>상 3,000cm² 미만인 경우:</u> <u>12포인트 이상</u>	<u><삭 제></u>
다) 포장 표면적이 <u>50cm² 미</u> <u>만인 경우: 8포인트 이상.</u> <u>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u> <u>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u> <u>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u> <u>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u> <u>표시할 수 있다.</u>	<u><삭 제></u>
라) 가), 나) 및 다)의 포장	

표면적은 포장재의 외형
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
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
른 통조림·병조림 및 병
제품에 라벨이 인쇄된 경
우에는 그 라벨의 면적으
로 한다.

<신 설>

<삭 제>

- 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영 별표 1 제
2호에 따른 수입 농수산
물 및 반입 농수산물
- (1) 포장 표면적이 3,000cm²
이상인 경우: 20포인트
이상
- (2) 포장 표면적이 50cm² 이
상 3,000cm² 미만인 경우:
12포인트 이상
- (3) 포장 표면적이 50cm² 미
만인 경우: 8포인트 이
상. 다만, 8포인트 이상
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
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
시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신 설>

(4) (1), (2) 및 (3)의 포장
표면적은 포장재의 외형
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품 등의 표시·광고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
준에 따른 통조림·병조
림 및 병제품에 라벨이
인쇄된 경우에는 그 라
벨의 면적으로 한다.

나)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수입 농수산물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가공품

(1) 10포인트 이상의 활자
로 진하게(굵게) 표시해
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
면 면적이 부족한 경우
에는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으나, 「식
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한 크기로 진하게
(굵게) 표시해야 한다.

(2) (1)에 따른 글씨는 각
각 장평 90% 이상, 자
간 - 5% 이상으로 표시
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

4)·5) (생략)
나.·다. (생략)

[별표 3]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

1. (생략)
2. 판매 매체에 대한 표시방법
가. 전자매체 이용
1) 글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인터넷, PC통신, 케이블TV, IPTV, TV 등)
가)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한 위치를 표시하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나) (생략)

시면 면적이 100cm²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장평 50% 이상, 자간 - 5%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4)·5) (현행과 같음)

나.·다. (현행과 같음)

[별표 3]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

1. (현행과 같음)
2. -----
가. -----
1) -----

가) -----: -----
----- 옆·위·아래에 붙여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매체의 -----

----- 표시할 경우에는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 표시해야 한다.

나) (현행과 같음)

다) 글자 크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그보
 다 커야 한다. 다만, 별도
 의 창을 이용하여 표시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정보에 관
 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
 한 표시·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따른다.

라) (생략)

2) (생략)

나. (생략)

3. (생략)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조사공무원증	
소속/직급: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임 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명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다) -----: -----
가격표시(최초 등록된 가
격표시를 기준으로 한다)
와 -----

 -----.

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조사공무원증	
소속/직급: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 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제10조의3제3항에 따 른 조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명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 어 주십시오.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연 락 처	(044) 201 - 2276